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886

제안년월일 : 2012년 6월 21일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」 상의 방화시설 등 폐쇄 및 훼손 등의 행위를 지도·단속함에 있어서 소방행정력의 미흡으로 인한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운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, 시민들로 하여금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이의 대가로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「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(이하 '비상구 신고포상금 조례')」로써 규정하고 있음.

「비상구 신고포상금 조례」의 시행·공포 이후 방화시설 등의 유지·관리에 대한 계도와 홍보 등 순기능적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, 소방행정의 목적이 시민의 소방법령 준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자를 단속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한 과태료 부과·처분실적을 소방행정의 성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, 주민이 서로 감시하게 되는 포상금 제도의 특성에 따라 주민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, 과태료 부과 징수라는 침해적 행정사무를 포상금 지급방식이라는 민간위탁방법을 통해 집행하는 것은 규제행정영역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임.

무엇보다 「비상구 신고포상금 조례」는 방화시설 등의 유지·관리를 위한 계도적인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·공포된 조례(2010년 7월)로서 2011년 기준으로 6,5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정도로 시민의 법에 대한 인지도와 순응도가 높아졌으므로 「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 및 제1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기　　타 :

(1) 입법예고 :
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 지 조 례 안

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은 이 조례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